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952호 2013. 4. 8(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1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30호 가좌주공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경미한 변경) ----- 4

공 고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396호 도시관리계획(연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재공고·열람 ----- 16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400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8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402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1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403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4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41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8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4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31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9-80호(1999.06.2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 서구 마전동 107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소2-2호선), 사업명: 당하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미집행 구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577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3. 04. 0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07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소2-2호선)사업
 - 【명칭】 당하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미집행 구간)
3. 사업의 규모 : 도시계획시설(도로:소2-2호선) L=198m, B=8m 중
미집행 구간 L=80m, B=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3. 04. ~ 201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아래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토지 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마전동	1070	도	7,804.7	754	인천광역시 서구		

■ 지장물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1	마전동	1070	창고	스레트	3.0	인천시 서구	
	-2	"	"	가옥	목조	36.0	"	
	-3	"	"	V.H	철골비닐	6.0	"	
	-4	"	"	V.H	철골비닐	11.0	"	
2	-1	마전동	1070	가옥	블록스레트	83.0	인천시 서구	
	-2	"	"	창고	스레트	4.0	"	

1. 위치도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 - 30호

가좌주공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경미한 변경)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1호(2012.01.09)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원 가좌주공2차아파트주택재건축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변경지정 내용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서구 도시개발과(☎032-560-477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04월 0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가좌주공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가좌주공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가좌동 308번지 일원	75,002.2	증) 22.5	75,024.7	

○ 정비구역 결정(변경)사유서

지정구분	위 치	면적(㎡)	지정(변경)사유
변 경	가좌동308번지 일원	75,024.7	·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

① 용도지역(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5,002.2	증) 22.5	75,024.7	100.0	

② 용도지구(변경없음)

○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73	가좌IC~ 자연녹지지역	일 반 미관지구	가좌동 308번지 일원	38,700	1,610	15	인고 제109호 (1999.9.9)	
						970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변경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격				기능	연장 (m)	시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	2	32	30~33	주간선 도로	8,081.0	도화동 대2-4	부천시 구역계	일반 도로	11,22,32 호광장	경고제160호 (1976.7.8.)	
기정	중	3	122	12~23	집산도로	901.9	대2-32	대2-35	일반 도로	-	인고제73호 (1977.3.31.)	
기정	소	1	1	12~15	국지도로	456.7	대2-32	중3-122	일반 도로	-	경고제206호 (1976.8.11)	
기정	소	3	10	6	국지도로	192.6	중3-122	소1-1	일반 도로	-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변경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주차장①	노외 주차장	가좌동 309일대	449.9	증) 0.3	450.2	-	조성후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주차장①	주차장	· 변경 · 면적: 450.2㎡	· 지적 측량에 따른 주차장 면적 변경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변경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24	주공2단지 공원	어린이 공원	가좌동 309일원 일대	1,501.0	감) 0.6	1,500.4	-	조성후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24	주공2단지 공원	· 변경 · 면적: 1,500.4㎡	· 지적 측량에 따른 공원 면적 변경

④ 도시계획시설(녹지) - 변경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녹지①	녹지	경관녹지	가좌동 308일원 일대	1,950.7	감) 26.7	1,924.0	-	조성후 무상귀속
변경	녹지②	녹지	경관녹지	가좌동 309일원 일대	1,614.5	감) 0.9	1,613.6	-	조성후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녹지	· 변경 · 면적: 1,924.0㎡	· 지적 측량에 따른 녹지 면적 변경
②	녹지	· 변경 · 면적: 1,613.6㎡	· 지적 측량에 따른 녹지 면적 변경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면적(㎡)	법정기준	
기정	관리사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대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8조
	주민공 동 시 설	경로당				상동55조
		문고				상동55조
		보육시설				상동55조
		휴게소				상동29조
		어린이놀이터				상동46조
		주민운동시설				상동53조
	근린생활시설					상동50조
	경비실					-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가좌주공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75,002.2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대	33	1	-	32	-	
변경	가좌주공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75,024.7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대	33	1	-	32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 등에 관한 계획(기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 칭	면 적(㎡)	명 칭	면적(㎡)						
기정	가좌주공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75,002.2	획지1	25,136.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99%이하	240%이하	90m이하		
			획지2	38,156.9		21.99%이하	240%이하			
			획지4	449.9	노외주차장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7	450.0	노유자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8	619.9	근린생활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1,2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4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5의5호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획지7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8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람주점제외)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 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에 저촉되는 행위 및 시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의 6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한계선	획지1	북서측 대로2-32호선		폭5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확보			
남서측대로 중로3-122호선				폭5m 지정						
획지2	남동측 소로2-1호선		폭3m 지정							
	북측인접대지 경계선		폭5m 지정							
획지2	동측 인접대지 경계선		폭3m 지정							
	북서측 대로 2-32호선		폭5m 지정							
	북측 중로3-122호선		폭3m 지정							
	북동측 중로3-122호선		폭5m 지정							
		남측 소로3-10호선		폭5m 지정						
		서측소로1-1호선		폭5m 지정						
완화적용기준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35.78% + 지하주차장계획 10% + 탑상형주택계획 5%								
		- 계획용적률 : 240%이하(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 용적률의 범 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50%이하)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기준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이상	30%이상	20%이상 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 주택 건설등)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시 법적상한용적률250%								

※획지 3의 어린이 공원, 획지 5와 획지6의 경관녹지는 별도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5에 1』 개정(2011.07.01)에 따른 “평균18층 이하” 계획삭제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 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 칭	면 적(㎡)	명 칭	면적(㎡)						
변경	가좌주공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75,024.7	획지1	25,143.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99%이하	240%이하	90m이하		
			획지2	38,164.4		21.99%이하	240%이하			
			획지4	450.2	노외주차장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7	450.1	노유자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8	619.9	근린생활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1,2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4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5의5호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획지7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8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람주점제외)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 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에 저촉되는 행위 및 시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의 6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한계선	획지1	북서측 대로2-32호선		폭5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확보		
남서측대로 중로3-122호선		폭5m 지정								
남동측 소로2-1호선		폭3m 지정								
북측인접대지 경계선		폭5m 지정								
동측 인접대지 경계선		폭3m 지정								
북서측 대로 2-32호선		폭5m 지정								
획지2	북측 중로3-122호선		폭3m 지정							
	북동측 중로3-122호선		폭5m 지정							
	남측 소로3-10호선		폭5m 지정							
	서측소로1-1호선		폭5m 지정							
완화적용기준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37.6% + 지하주차장계획 10% + 탑상형주택계획 5%							
			- 계획용적률 : 240%이하(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50%이하)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기준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이상	30%이상	20%이상 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 주택 건설등)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시 법적상한용적률250%							

※ 획지 3의 어린이 공원, 획지 5와 획지6의 경관녹지는 별도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5에 1』 개정(2011.07.01)에 따른 “평균18층 이하” 계획삭제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환경보전계획

검토항목	검토 결과	환경영향	대책 및 반영사항	비고	
자연환경	토양포장 우수유출	○ ◦토양포장, 우수유출 다소 변화 예상	◦토양포장도 감소 ◦보도, 주차장 등을 자연상태의 토양으로 유지하거나 투수성 포장재 사용 ◦우수유출량 감소	-	
	지형변동 절·성토 균형	○ ◦절·성토 발생 및 미미한 지형변화 예상	◦지형변화 최소화 ◦절·성토의 균형을 고려하여 토양의 외부 유출, 내부유입 최소화 ◦표토(비옥토)유실 방지로 표토층 선 확보 및 적정 장소 적치로 조경수 식재용으로 재활용	-	
	녹지변동 녹지체계	○ ◦녹지화 증가 예상 ◦녹지대 연결 필요	◦녹지면적(공원 및 녹지)의 증가로 녹지화를 증가 시킬 것으로 예상됨 ◦사업지구 주변의 자연요소와 상호·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녹지대를 고려함에 따라 도심지 녹지 활용도 측면에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습지보전	×	-	-	-
	비오톱	○ ◦비오톱 유형 변화 ◦비오톱 공간 증가예상	◦사업시행 후 사업지구의 비오톱 유형은 불투수 포장 비율이 70%미만인 공동주택 지로의 변화예상 ◦녹지면적 확보로 동·식물의 미 서식지인 비오톱 공간 증가가 예상됨	-	
바람	×	-	-	-	
에너지	○ ◦에너지 소비 증가예상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단지조성	-		
환경오염	×	-	-	-	
경관	○ ◦고층의 높은 경관으로 변화	◦주변 건축물 및 인근 주거지와 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층고계획 수립	-		
휴식 및 여가공간	×	-	-	-	
시행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 ◦비산먼지, 폐기물, 공장 소음문제 등 발생 등 예상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 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공사 시 적정 처리 계획 수립·시행	-		
※검토결과 :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영향 예상됨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역 내 대부분의 도로는 보차분리가 되어있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이 안전하지 못한 실정 또한, 주차장의 부족으로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이 협소하므로, 응급시 비상차량의 진입이 어려움. ◦ 따라서,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를 위해 단지내 차량동선의 지하로유도하여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 유지 ◦ 재해발생시 소방용차량 등의 비상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비상차량 진입동선 계획을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또는 응급상황에 대처가 용이하도록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
화재 및 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은 가좌주공2차아파트는 재난에 취약한 구조의 건축물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지진 등의 재해발생시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음. ◦ 대상지는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 할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이를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의 벽식구조로 건설을 하며, 내화재료 사용 및 내진설계를 통한 설계시행이 필요
홍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중 홍수유출량은 개발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시 발생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 ◦ 따라서,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유역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 사업구역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홍수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집중호우시 역류에 의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수관망계획을 수립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7m)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공사시 학생 및 교직원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비산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 살수, 세론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일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면 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75,002.2	획 지 1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대	25,136.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 2		38,156.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 3		1,501.0	공원
		획 지 4		449.9	주차장시설
		획 지 5		1,950.7	녹지
		획 지 6		1,614.5	녹지
		획 지 7		450.0	노유자시설
		획 지 8		619.9	근린생활시설(존치용지)
		-		5,122.8	도로
변경	75,024.7	획 지 1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대	25,143.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 2		38,164.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 3		1,500.4	공원
		획 지 4		450.2	주차장시설
		획 지 5		1,924.0	녹지
		획 지 6		1,613.6	녹지
		획 지 7		450.1	노유자시설
		획 지 8		619.9	근린생활시설(존치용지)
		-		5,158.3	도로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전체면적계 도로면적 포함)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 변경없음

①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②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10)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해당 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변경없음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2)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 시 동법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건설 공급

13)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변경없음

① 기존수목현황

구분	수종	규격	수량	이식 가치	구분	수종	규격	수량	이식 가치
1	감나무	3.5H × R10	17	상	11	단풍나무	4.5H × R15	60	중
2	감나무	4H × R12	58	중	12	느티나무	4H × R10	25	하
3	감나무	4.5H × R15	30	상	13	느티나무	5H × R15	11	상
4	감나무	5H × R15	46	하	14	벚나무	3.5H × R12	23	상
5	은행나무	3.5H × R10	67	하	15	벚나무	4H × R15	35	하
6	은행나무	4H × R13	30	상	16	벚나무	5H × R20	28	중
7	은행나무	5H × R18	63	중	17	벚나무	5.5H × R20	18	중
8	은행나무	6H × R22	67	중	18	목련	4.5H × R20	12	중
9	단풍나무	3H × R7	24	상	19	목련	5H × R15	11	상
10	단풍나무	3.5H × R7	63	중	20	목련	6H × R18	12	중
조경수목 총계 700주 중 이식가치 “상” 146주									

② 기존수목활용 계획

구분	수목 활용 계획
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는 도심지내에 속하여 있고 주변지역 역시 도심지로서 환경부 법적 보호종 및 보호수 등은 조사되지 않음 ◦본 사업지구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 비오톱·조경부지를 제외하면 특별한 녹지는 존재하지 않음 ◦사업지구의 녹지 자연도는 시가지·나대지(DGN 1등급)지역인 것으로 산정됨 ◦본 사업지구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지역에 식재된 조경수목은 은행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목련, 느티나무 등 약 총 700주가 분포하고 있음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내 분포하는 조경수목 중 수종, 수형 및 이식비용과 공사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식가치 “상” 상태인 146주의 이식수종을 선정·재이식하여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임 ◦사업지구 내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함 ◦사업지구 내 조경녹지, 놀이터 등을 계획하고, 미 서식처를 마련할 계획임

14)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용적률 완화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

② 지하 주차장 계획(단지내)

- 비상차량의 지상주차장을 제외한 전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계획
- 주차장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한 진출입램프 주요지점에 경고등 설치

15)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396호

도시관리계획(연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고·열람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828호(2012.7.26)로 공고·열람한 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분과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수정 가결한 사항을 반영하여 재공고·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04.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위 치 : 서구 연희동 726-1번지, 심곡동 239-8번지 일원
- 면 적 : 783,089.7㎡
-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내용

구분	당초 공고·열람(안) (인천서구공고 제2012-828호)	재 공고·열람(안)
도시 계획 시설	○ 근린광장 신설 : 4,204.5㎡	○ 변경 없음
건축 용도 · 밀도 · 높이 계획	○ 염곡로변 단독주택용지(1-16,1-35) 건축물용도 및 층수 변경 : C → B ○ 서곶로변 업무시설유도 : B → B-1 ○ 단독주택용지(B, C) 용적률 : 200% → 220% ○ 단독주택용지(B, C) 높이 : 지상층 전부를 필로타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서 제외 ○ 단독주택용지(B-1) 용적률 : 200% → 250%	○ 변경 없음 ○ 삭제 ○ 변경(200%) ○ 변경 없음 ○ 삭제
가구 획지 계획	○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 변경 없음

2. 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위 치 : 서구 연희동 790번지, 심곡동 302번지, 공촌동 303-1번지 일원
- 면 적 : 556,431.8㎡
-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내용

구분	당초 공고·열람(안) (인천서구공고 제2012-828호)	재 공고·열람(안)
도시 계획 시설	○ 공공청사(서부경찰서) 변경 : 13,318.5㎡→15,106.3㎡ (증1,787.8㎡)	○ 변경 없음
건축 용도 · 밀도 · 높이 계획	○ 서곶로변 업무시설유도 : B → B-1 ○ 단독주택용지(B, C) 용적률 : 200% → 220% ○ 단독주택용지(B, C) 높이 : 지상1층 전부를 필로타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서 제외 ○ 단독주택용지(B-1) 용적률 : 200% → 250%	○ 삭제 ○ 변경(200%) ○ 변경 없음 ○ 삭제
가구 획지 계획	○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 변경 없음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신문게재일 다음날 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재공고·열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 열람 장소에 비치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400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4.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축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축제의 종류에 따라 분과위원회 구성 등 관련조항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축제위원회 구성인원 변경
 - 15인이상 35인 이하 ⇒ 40명 이내로 변경(제20조제1항)
 - 부위원장 신설(제20조제2항)
 -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구의원 2명 포함(제20조제3항)
- 상임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변경 운영(제2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3. 4.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번지) /

☎032-560-4341 / Fax032-560-274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축제위원회의 구성등”을 “축제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5인이상 35인이하”를 “40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구의원 2명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1조 본문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위원장등의 직무”를 “위원장 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문화예술담당”을 “해당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상임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축제의 종류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축제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26조 제1항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분과위원회에 추가 할 수 있다.
-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되,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 ⑤ 제22조의 규정은 분과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축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402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4.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서구립예술단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실제운영과 일치되도록 예술단의 명칭과 세부운영사항에 대한 관련 조항을 정비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 명칭과 세부사항 변경
 -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체 ⇒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제1조)
 - 실버악단, 무용단 삭제 ⇒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풍물단(제2조)
 - 부위원장 신설, 운영위원회 구의원 1명 포함(제4조제3항)
- 특별전형 절차 신설 (제7조제6항)
- 단원 위촉연령 변경 (제8조제1항)
 - 소년소녀합창단 : 초·중학생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풍물단 : 만 20세 이상 ⇒ 만 14세 이상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3. 4.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번지) /
☎032-560-4341 / Fax032-560-274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 라 한다)를” 을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을”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예술단단장” 을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예술단체에는 실버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풍물단, 무용단” 을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이하 “예술단” 이라 한다)에는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풍물 단”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장 1인” 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으로 하고, “15명이 내” 를 “15명 이내”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구청장이 되고” 를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로 하고, “기타 위원은” 을 “기타 위원은 구의원 1 명과”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을 “위촉직” 으로 하고, “보선된 위원” 을 “ 보궐위원” 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 을 “전임자 임기 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6조 중 “합격한 자” 를 “합격한 사람” 으로 하고, “인정 되는 자” 는 "인정 되는 사람은 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6조에 따른 특별전형은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초·중학생” 을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풍물단·무용단” 을 “풍물단” 으로 하고, “만20세 이상 60세 이하” 를 “만 14세 이상 만 60세 이하”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병역법” 을 “「병역법」”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403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 4.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 별표1의 예술단별 정원 및 별표2의 예술단별 예술감독 및 단원의 수당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 명칭 변경 및 운영
 -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체 ⇒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제1조)
- 별표1의 실버악단 및 무용단을 삭제
- 별표2의 예술단별 예술감독 및 단원의 수당지급기준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3. 4.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번지) /
☎ 032-560-4341 / Fax 032-560-274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조례" 라 한다)의” 를 “의” 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체” 를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 이라 하고, “예술단체” 를 “예술단” 이라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단체별” 을 “예술단별” 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로 하고, “서구립예술단(이하 “단원” 이라 한다)의 단체별” 을 “예술단의” 로 하며, “예술단체별” 을 “예술단” 으로 한다.

제6조 내용 중 “각 예술단체별” 을 “예술단별” 로 한다.

제7조 제1항 “예술단체별” 을 “예술단별” 로, 제2항 “예술단체” 를 “예술단” 으로 한다.

별표1의 제목 중 “예술단체별” 을 “예술단별” 로 하고, 본문 중 실버악단 및 무용단을 삭제한다.

별표2 “예술단체별” 을 “예술단별” 로 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수당은 2013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술단체별 정원

예술단체명	정 원	비 고
합 창 단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단무장 1명 성악지도자 1명 단원 60명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단무장 1명 성악지도자 1명 단원 70명	
풍 물 단	연출자 1명 훈련장 1명 단원 60명	

[별표 2]

예술단체별 예술감독 및 단원의 수당 지급 기준

[단위 : 원]

예술단체명	직 위	지 급 액	비 고
합 창 단	지휘자	1,200,000	월정액
	반주자	800,000	"
	단무장	500,000	"
	성악지도자	500,000	"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1,200,000	"
	반주자	800,000	"
	단무장	500,000	"
	성악지도자	500,000	"
풍 물 단	연출자	1,200,000	"
	훈련장	800,000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41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 4.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0년에 개정된 현행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독 및 선수의 임용자격에서 가맹단체에 감독과 선수로 등록 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제4조)
- 감독, 선수의 의무 중 겸직금지의 의무 추가(제6조)
-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선발을 서구생활체육회 임원 중에서도 위촉(제14조)
- 징계 조항에 폭력, 성추행, 성폭력 행위 추가 및 징계 종류 세분화(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3. 4.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번지) /

☎032-560-4133 / Fax032-560-274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선수는 해당 학교장 또는 가맹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한다.”를 “운동경기부 감독 및 선수로 등록할 때 대한체육회가 정한 가맹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로 한다.

제6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겸직금지의 의무 : 감독 및 선수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1조 본문 중 “퇴직금을 「공무원연금법」 제48조에 따라”를 “퇴직금을”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서구 체육회임원”을 “서구체육회·서구생활체육회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 중 “감독, 선수”를 각각 “감독 및 선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4. 훈련거부 및 선동의 집단행위를 한 경우
5. 감독 및 선수가 폭력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감독 및 선수가 성추행 또는 성폭력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같은 조 제2항 중 “해임, 감봉, 훈계”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1. 해임
2. 정직
3. 감봉
4. 견책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2항의 징계는 「지방공무원법」 제71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4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4.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0년에 제정된 현행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독, 선수의 임용과 제출서류 세분화(제4조)
- 면직 조항에 가맹단체의 징계처분 포함(제6조)
- 연봉에서 퇴직금 제외(제9조)
- 퇴직급여 산출방식 추가(제1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3. 4.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번지) /

☎ 032-560-4341 / Fax 032-560-274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는 감독 1명, 선수 6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지휘·감독) ① 운동경기부는 문화관광체육과 소속으로 두고 감독 및 선수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감독은 선수 발굴, 육성 및 지도·감독의 책임을 진다.

③ 감독은 선수 중에서 주장을 임명하고, 주장은 감독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제출서류 및 임용) ① 감독이 운동경기부 임용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2.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3. 경기지도자자격증
4. 지도실적증명서
5. 최종학력증명서
6. 운영계획서
7. 건강진단서

② 선수가 운동경기부 임용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졸업예정자
 - 가. 대한롤러경기연맹이 지급하는 지원서
 - 나. 경기실적증명서
 - 다. 이력서
 - 라. 건강진단서

2. 일반인

- 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 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 다. 경기실적증명서
- 라. 경력증명서
- 마. 이력서
- 바. 건강진단서

③ 임용이 결정된 감독 및 선수는 계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2. 재직증명서 또는 이적동의서
3.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4. 명함판 사진 2매

④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 제7항에 따라 선수의 심의는 별표 1을 적용한다.

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독 및 선수의 임용 전에 결격사유를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야 한다.

⑥ 계약 및 재계약 기간을 감독은 2년, 선수는 1년으로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운동경기부 입단 계약서에 따라 입단 약정을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선수의 최소계약유지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⑦ 임용된 감독 및 선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 ① 구청장은 감독 및 선수에 대한 징계 요구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② 징계의결 시 징계당사자에게는 진술권이 있고, 위원회는 징계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6조(면직) ① 구청장은 감독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2. 감독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3. 질병 또는 사고로 재활기간을 거친 후에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
4.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휘감독자의 명에 불응할 때
6. 징계(가맹단체의 징계처분 포함)에 의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7. 감독이 전국체육대회에서 3년간 1회 이상 3위 안에 입상하지 못하였을 때
8. 선수가 전국규모대회에서 2년간 1회 이상 3위 안에 입상하지 못하였을 때
9.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면직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감독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급한다.

제7조(복무) ① 감독 및 선수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으로 하며,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은 감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무일도 훈련 및 출전을 명할 수 있다.

③ 감독 및 선수는 연간 20일의 범위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가 및 특별휴가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2조와 제23조를 준용한다.

④ 감독 및 선수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6개월 이내

2.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2개월 이내

⑤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협약한 지정병원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감독 및 선수가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고, 휴가일수는 별표 2와 같다.

⑦ 감독 및 선수는 휴가 등을 실시하기 전 복무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실시한다.

제8조(훈련 및 대회참가) ① 감독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선수 훈련 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감독은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 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일정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훈련 및 대회 참가 1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수 등) ① 감독 및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연봉제로 한다.

② 감독 및 선수의 월 보수는 연봉액의 12분의 1을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연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감독과 선수의 연봉은 별표 3과 같다.

2. 감독 및 선수가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여 4회 이상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때는 전년도 성적으로 연봉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출전비용 등) ① 감독 및 선수가 전지훈련, 대회출전 및 우수선수 유치를 목

적으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고, 감독은 5급 공무원, 선수는 7급 공무원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식비는 충분한 영양섭취로 체력 및 경기력 유지를 위하여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우수선수 유치비) ① 구청장은 우수선수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선수 유치비는 최초 임용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선수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치비가 지급되어 임용된 선수는 별표 4와 같이 최소계약유지기간 이상 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의무기간 내 퇴직 시에는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 및 우수선수 유치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이 종료된 우수선수에 대하여 재계약을 할 경우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상금) ① 감독 및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선전을 통하여 상위에 입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라 선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사기양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6에 따라 입상보상금을 지급하고, 감독의 각종 대회 입상보상금은 팀 참가 시 운동경기부 선수 중 최고 수혜 선수와 동일금액을 지급한다.

③ 입상보상금과 별도로 감독 및 선수에게 각종 대회에 출전한 연간 입상성적을 종합하여 별표 7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고, 성과금은 점수당 1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독의 성과금 지급 점수는 선수 중 가장 높은 점수의 선수와 동일한 점수로 한다.

제13조(퇴직급여) ①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퇴직금은 당 구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눈 수치에 월 평균보수를 곱한 금액
2. 월평균 보수는 퇴직 전 3개월의 보수 총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수치에 30을 곱한 금액

②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퇴직급여 청구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퇴직급여 청구서 접수 대장에 기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신분보장) ① 감독 및 선수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징계처분(가맹단체의 징계처분 포함)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

하여 면직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는다.

② 감독 및 선수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독 및 선수의 기량이 우수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1. 감독 - 65세
2. 선수 - 35세

제15조(급식비) 선수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훈련복 및 장비지급 등) ① 감독 및 선수에게 각종 대회 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훈련복과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훈련복 지급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감독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훈련복 및 장비 구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합숙소 설치 운영) 선수의 합숙훈련 및 숙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18조(관용차량운행) 운동경기부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원활한 이동을 위해 차량을 구입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료보상) ① 감독 및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에 대비하여 감독 및 선수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선수 점수 산정 기준표

구분	배점	기 준		비고
경 력	5	○ 실업팀 선수 근무경력 - 3년 이상 : 5점 - 2년 이상 3년 미만 : 4점 - 1년 이상 2년 미만 : 3점 - 1년 미만 : 2점		
경기력	30	전국규모대회 (30점)	A(30) : 개인 1위 1회 이상 B(26) : 개인 2위 1회 이상 C(22) : 개인 3위 1회 이상 D(18) : 단체 2위·3위 1회 이상	
	30	국 제 대 회, 전국체육대회	A(30) : 국제대회 개인 1위 1회 이상 B(28) : 국제대회 개인 2위 1회 이상 국제대회 단체 1위 1회 이상 C(26) : 국제대회 개인 3위 1회 이상 국제대회 단체 2위 1회 이상 D(24) : 국제대회 단체 3위 1회 이상 전국체육대회 개인 1위 1회 이상 E(21) : 전국체육대회 개인 2위 1회 이상 전국체육대회 단체 1위 1회 이상 F(18) : 전국체육대회 개인 3위 1회 이상 전국체육대회 단체 2위 1회 이상 G(15) : 전국체육대회 단체 3위 1회 이상 국가대표로 국제대회 참가	
감독 배 점	10	○ 복무 등 - 근무태도 : 5점 (탁월5, 우수4, 보통3, 미흡2, 부진1) - 팀기여도 : 5점 (탁월5, 우수4, 보통3, 미흡2, 부진1)		
심의위원 배 점	25	○ 선수의 기여도 및 장래성 등		

- 가. 감독 및 선수를 신규임용 할 경우에는 “복무 등”의 배점을 10점으로 한다.
- 나. 국제대회는 올림픽게임,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를 말하고, 그 밖의 국제대회는 전국규모대회와 동일하게 본다.
- 다. 전국규모대회 경기력 점수 산정은 여러 대회에서 2개 이상 입상한 경우 최고 입상 성적을 적용한다.
- 라. 국제대회와 전국체육대회의 경기력 점수 산정은 각 분야에서 입상한 경우 두개 부문 중 최고 입상 성적을 적용한다.
- 마. 감독배점의 “팀기여도”라 함은 팀워크 및 대회 출전 시 팀의 우승을 위하여 기여함을 말하고, 심의위원회의 “기여도”라 함은 팀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서구청의 위상을 높인 경우를 말한다.
- 바. 신규선수는 60점 미만인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특 별 휴 가 일 수

(단위 : 일)

구 분	휴가일수		
	종합우승	단체 1위	개인 1위
국 제 대 회	10	7	5
전국체육대회	7	4	3
전국규모대회	3	2	1

[별표 3]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등급별 연봉

(단위 : 만원)

직 책	등 급	연 봉 액		비 고
		점 수	보수액	
감 독	1	95점 이상 ~	5,000	
	2	90점 이상 ~ 95점 미만	4,800	
	3	85점 이상 ~ 90점 미만	4,600	
	4	80점 이상 ~ 85점 미만	4,400	
	5	75점 이상 ~ 80점 미만	4,200	
	6	70점 이상 ~ 75점 미만	4,000	
	7	65점 이상 ~ 70점 미만	3,800	
	8	60점 이상 ~ 65점 미만	3,600	
선 수	1	95점 이상 ~	4,600	
	2	90점 이상 ~ 95점 미만	4,400	
	3	85점 이상 ~ 90점 미만	4,200	
	4	80점 이상 ~ 85점 미만	4,000	
	5	75점 이상 ~ 80점 미만	3,800	
	6	70점 이상 ~ 75점 미만	3,600	
	7	65점 이상 ~ 70점 미만	3,400	
	8	60점 이상 ~ 65점 미만	3,200	
	9	55점 이상 ~ 60점 미만	2,800	
	10	50점 이상 ~ 55점 미만	2,400	

가. 별표 1에 의한 점수 적용

나. 감독 8등급 미만, 선수 10등급 미만인 경우는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

[별표 4]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급수	유 치 비 기 준	최소계약 유지기간	지급액
1급	○ 1년 이내에 국가대표선수로서 국제대회(올림픽 게임,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 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개인부문 3위 이내의 입상 경력자	5년	50,000
2급	○ 2년 이내에 국가대표선수로서 국제대회(올림픽 게임,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 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개인부문 3위 이내의 입상 경력자	3년	30,000
3급	○ 현재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활약하고 있는 사람 ○ 1년 이내에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 2회 이상 입상 경력자	2년	20,000
4급	○ 1년 이내에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 1회 이상 입상 경력자 ○ 1년 이내에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한 사람	2년	15,000
5급	○ 1년 이내에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내의 입상 경력자	2년	10,000

가.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 기준은 해당선수의 신규 입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국가대표선수의 자격 기간은 대한인라인롤러연맹의 국가대표선수 선발지침을 준용한다.

[별표 5]

대회출전 선전 장려금 지급액

구 분	국 제 대 회	전국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	비 고
금 액	선수당 500,000원	팀당 500,000원	팀당 300,000원	

※ 국제대회 : 올림픽게임,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그 밖의 국제대회는 전국규모대회와 동일하게 본다.)

[별표 6]

입상보상금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 급 기 준					
입 상	종 목 별		지 급 액 (단위 : 원)			
			1 위	2 위	3 위	
	선수	개인		300,000	200,000	100,000
		단체	국제대회	400,000	300,000	200,000
			전국체육대회	300,000	200,000	100,000
			전국규모대회	200,000	100,000	-

- 가. 입상보상금 지급은 동일인이 단체분야와 개인분야로 지급하며, 각 분야에서 2개 이상 입상한 경우 분야별 최고 입상성적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 나. 단체·개인전 분야별로 전국체육대회는 그 보상금액의 100퍼센트, 국제대회는 그 보상금액의 200퍼센트를 추가 지급한다.

[별표 7]

성과금지급점수 산정기준

(단위 : 점)

구 분	1위	2위	3위	비고
국제대회	100	80	60	※ 동일인이 같은 대회의 단체 분야와 개인분야에서 각각 2개 이상 입상한 경우 각 분야별 최고 입상성적에 대하여 점수 산정한다.
전국체육대회	60	40	30	
전국규모대회	15	10	7	

비고) 1. 국제대회 : 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그 밖의 국제대회는 전국규모대회와 동일하게 점수를 산정한다.)

2. 각종 입상자의 신기록 수립 시 추가로 가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대회신기록 3점, 한국신기록 5점, 아시아신기록 10점, 세계신기록 20점)

[별표 8]

훈련복 지급기준(연간)

구분	츄리닝	유니폼	땀복	잠바	파카	운동화	가방	기타
지급량 (1명당)	2	1	2	1	1	2	1	필요시

(별지 제1호서식)

지 원 서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여자 인라인롤러부)에 입단하기 위해 본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일, 입단 후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최종학력			
경 력			
주요경기 실 적			

년 월 일

본 인 (인)

보호자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추 천 서

○ 주 소 :

○ 종 목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인라인롤러 선수로서 우수한 자질과 경기력을 보유하여 이에 추천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인천광역시 ○○ 경기단체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여자 인라인롤러부)에 입단을 지원하면서 관계규정을 충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단을 명하여도 이의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월 2회 이상 훈련에 불참하거나 무단지각 및 무단조퇴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훈련 및 대회출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4. 직장인,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년 월 일

소 속 :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여자 인라인롤러부)

주 소 :

직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입단 계약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_____(이하 “을” 이라 한다)는 (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선수)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의 증명을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상호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및 의무)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 라 한다) 발전을 위하여 갑은 을에게 합의된 연봉을 지급할 의무를 갖고, 을은 갑의 규정을 준수하며 그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의무를 갖는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____년 1월 1일부터 ____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기준연봉) 갑은 제2조의 계약기간에 을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일금 _____원(세금포함)을 기준연봉으로 하여 이 계약서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연봉의 조정) 갑은 이 계약에 의한 을의 이행 정도와 경기실적 결과에 따라 연봉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제5조(지급방법) 갑과 을은 연봉지급방법에 대하여 양자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방법 : 연봉액을 12회로 분할 지급한다.
2. 지급시기 :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근무일에 지급한다.

제6조(입상보상금) 갑이 을에게 출전을 요구한 대회의 경기종료 후 그 성적에 따라 갑은 을에게 입상자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갑은 규정과 계약서상의 준수사항을 을로 하여금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갑에게 명예훼손이나 재산상의 손실이 오지 않도록 독려할 권리가 있는 반면, 모든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한 을의 이익보호와 을의 권리행사에 적극 협조한다.

② 을은 규정과 계약서상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계약기간 동안 갑이 요구하는 경기 및 갑의 훈련을 포함한 모든 행사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을은 갑의 의무이행 도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 갑이 협약한 지정병원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을에게 수혜자격이 있다. 다만, 을과 갑의 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건강을 해치는 어떠한 활동도 하여서는 안 된다.
5. 을은 갑의 규정 및 계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훈련과 관련된 비밀이나 내부적 사항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지불의 한계) 을은 제3조 및 제6조에 명시된 것 이외의 보수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사고 시 보수지급)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운동경기부활동이 불가능하였을 때 31일째 되는 날부터 훈련 및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 1년을 기준으로 연봉의 330분의 1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상 등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활동경비의 부담) 갑은 계약에 명시된 연봉 외에 계약기간 동안 을이 갑을 위하여 전지훈련, 대회참가로 출장하는 경우의 활동경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를 부담한다.

제11조(용기구) 갑은 훈련 또는 경기에 필요한 용기구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상해보험)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실시한 훈련 및 경기로 인한 상해(사망 포함)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상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13조(건강진단) 을은 계약 체결 전 육체 및 정신적인 면에 대한 결함 유무를 증명하기 위해 종합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아 그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4조(을의 계약위반)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계약을 파기한다.
2. 갑이 입은 피해액의 보상에 필요한 금액을 을로부터 배상 받는다.

제15조(계약갱신) 선수계약 갱신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계약해지) 조례 제6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①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분쟁 발생 시에는 인천지방법원의 조정에 따른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해당할 경우또는 감독, 소속선수 간 불화 등으로 인한 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더 이상 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팀 해체 등 계약을 해지한다.

년 월 일

“갑”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 (인)

“을” 성 명 : (인)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별지 제5호서식)

신 분 증

<앞 면>

신분증
사진
No.
성명 :
인천광역시서구청

<뒷 면>

소 속 : 인천광역시서구청
직 명 : _____
성 명 : _____
주민등록 번호 : _____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세로 63×90mm)

(별지 제6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기록카드

부 명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 글)	본관		성별	생년월일	주소1			생활근거지		등록기준지			
					주소2								
	병 력 관 계	해당 없음	미 필			복 무							
			역종	체격등위	미필사유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영년월일	전역년월일	MOS
	개 인 신 상 관 계	신체 사항	신 장	체 중	시력		색 맹	혈액형	건강상태	종 교	취 미	특기	
		재산 사항	동 산		부 동 산		가 옥	부 업 명	부업일수	재산총액			
	정 당 사회단체	단 체 명		직책	가입년월일	탈퇴년월일	단 체 명		직 책	가입년월일	탈퇴년월일		
	가 족 사 향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직장직위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직장직위	
학 력	기 간		학교명 및 전공과목			학위	기 간		학교명 및 전공과목			학위	
전 력	기 간		근무처		직위	기 간		근무처		직 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인면사항	임용년월일	직 위		확 인	퇴직년월일	직위	확 인			
연봉	년 월 일	연봉	근무일수	확 인	년 월 일	연봉	근무일수	확 인		
임용전 경기실적	기간	대회명		장소	전적	기간	대회명		장소	전적
임용후 경기실적	기간	대회명		장소	전적	기간	대회명		장소	전적

(별지 제7호서식)

징계 의결 요구서

인적 사항	①성명	한 글		②소 속		③직 위	
		한 자		④주 민 등 록번호		⑤재직기간	년 월
	⑥주소						
⑦ 징계 사유							
⑧ 징계 의결 요구 권자 의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이 적 동 의 서

□ 이적 선수 현황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한 자			
	주 소				
경 력 사 항	근무기간		종 목	직 위	근무부서
	부 터	까 지			
			인라인롤러		
근무년한					
퇴직사유					
용 도					

위와 같이 우리구에 근무한 선수가 _____으로 이적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별지 제10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여자 인라인롤러부) 훈련일지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참석 현황	참석대상	참석인원	불참자	불참자내역				
				계	교육	연가	병가	기타
훈련 내용	시 간		훈련내용			장 소		
특이 사항								

(별지 제11호서식)

전지훈련(출전) 계획서

- 기 간 :
- 장 소 :
- 사 유 :
- 훈련 또는 출전자 :
- 현지숙소 및 연락처 :
- 세부일정별 계획

	일자별			
시간대별 훈련(출전)사항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비 고

년 월 일

작성자 감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퇴 직 금 여 청 구 서

성 명		생년월일	.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퇴 직 년 월 일	
퇴직당시 소속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여자 인라인롤러부)			퇴직당시직명	

첨 부 : 사직서 1부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

소 속	직 명	근 무 기 간	발 령 청	확인(업무담당)
		. . . ~ . . . (총근무일수 :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	

○ 지급금액 : 금 원정(금 원)

○ 퇴직전 : 원	○ 퇴직금 : 원	○ 퇴직금
월평균 보수	산출액	전환금 : 원
		납부액

※ 비고 : 점선 윗부분만 청구인이 직접 기입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별지 제13호서식)

퇴직급여 청구서 접수대장

접수번호	소 속	직 위	성 명	퇴직일자	접수일자	비고

